##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2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김교흥・이성만・정일영

김병욱 • 허종식 • 김회재

한병도 • 박찬대 • 유동수

문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단지의 조성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음.

그런데 추후 재활용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각 조합원들이 토지를 분양받게 되면 그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별도로 성립되는데, 이 때 조합원의 토지 분양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초 협동조합 명의로 토지 취득 시 과세표준에 각 조합원이 분담한 토지 구입비용이 다시 포함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이 조성한 재활용단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관련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산업관련 산업시설용지(이하"재활용단지"라 한다)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조합원의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 \* 전체 조합원의 재활용단지 관련 분담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 (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 설>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 다)이 조성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활용산업관련 산업시설용지(이하 "재활 용단지"라 한다)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다 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 해당 조합원의재활용단지관련 분담금전체 조합원의재활용단지관련 분담금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